

의안번호	제25호
의결 년 월 일	2026년 3월 17일 (제335회)

심 의 의 결 사 항
-------------------

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
제안연월일	2026. 3. 17.

# 금산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(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제안)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3. 1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

## 1. 제안이유

「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」가 2026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명 칭 :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나. 구성목적 : 안전심사

다. 활동기간 :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

라. 위 원 수 :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

마. 권한범위 : 「금산군의회 회의규칙」에 따른 안전심사(보류 또는 계류 중인 안전 포함) 및 본회의 제안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
나. 「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
**□ 지방자치법**

##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 -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**□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**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활동기간 내에 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해당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다.
-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, 기금운용계획안(변경을 포함한다)과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(변경을 포함한다)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